

돈육 군납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요즈음 양돈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잠정적인 돈지육 군납 중지 조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작년에도 군납 시작후 불과 몇 일만에 돈지육의 군납을 중지하더니 금년 들어서도 군납 시작 불과 10여일만에 돈지육의 군납을 중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들이다.

또 돼지고기의 군납을 위해 계획생산을 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정부의 돈지육 군납 중지 조치 당시의 돈가가 정부의 가격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줄 만큼 오르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 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정부의 비육우 정책 잘못으로 인해 팬스레 양돈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축협중앙회를 통해 돈육의 군납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축협에 대해 6월말까지 군납용 돈지육을 우정육(牛精肉)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돈육의 군납은 1월 14일 이후부터 돈지육 물량 만큼 우정육으로 대체되었고 돈정육만 계획대로 소량씩 납품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같은 결정은 농수산부와 국방부, 축협중앙회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돈지육의 군납 중지 배경은 정부의 축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정책,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값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돈육 등 축산물의 군납은 과거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으나 축협을 통한 군납은 국방부와 축협중앙회의 협정에 의해 지난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다.

계약방법은 국방부와 축협중앙회가 지육 kg당 단가, 또는 정육 kg당 단가에 대한 계약을 하면 각 지역축협과 해당지구 군부대는 계약 단가에 의해 월별로 물량계약을 한다. 군부대와의 물량계약이 끝나면 지역축협은 다시 양돈농가(조합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물량 및 단가 계약은 모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계약이 완료되면 양돈농가들은 계약 시기 및 물량에 맞춰 계획생산을 한 후 지역축협의 출하지시에 의해 납품을 하고 있다. 납품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출하만큼은 계획생산을 해야만 가능하다.

이와같은 축협과 군부대와의 수의계약에 의한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은 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제정: 1970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4997호, 개정: 1981년 1월 17일 · 대통령령 제10166호)에 준해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 단체인 축협을 통해 군에 필요한 돈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축협으로서는 군납을 희망하는 양축가(조합원)들이 계획생산을 통해 시중 시세의 등락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된다.

돈육의 군납 중단 후 돋가는 1월 초순의 2,400원대에서 2월 중순에는 1,800원대로 떨어져 계약농가들 “피해 극심” 주장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돈육을 군납하는 양돈농가 대부분이 대규모 농장이 아닌 전·부업 농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이번 정부의 돈지육 군납 중지 조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돼지고기를 비롯해 쇠고기, 닭고기 등 모든 축산물의 가격과 수급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취한 조치일 것이다. 축산물의 어느 분야가 수급조절이 안 될 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또 양돈인들도 모두 호응해야 한다.

그러나 군납을 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한결 같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돈육의 소비가 감퇴돼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면서 돈육의 군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이들은 최근의 소값 하락으로 부득이 돈육의 군납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라면, 기존 군납 물량만큼은 축협을 통해 계약단가로 수매를 해 주던지 아니면 그 밖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돼지고기 군납 중지 조치 후 돼지고기 가격은 계속 떨어져 1월 초순의 2,400원(지육 kg) 대에서 2월 중순에는 1,800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1,800원대는 축협에서 추산하고 있는 군납시 제 비용을 공제한 농가수취가격 2,075원 보다 200여 원 낮은 가격이다.

또 군납을 하는 양돈농가들은 불가피한 사정

으로 군납을 중지할 경우에는 그 시행을 최소한 군납 중지 발표 후 2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적정출하시기 실기(失機)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영세 양돈농가에서는 군납에 대비해 최소 납품 3~4개월 전에 자돈을 구입하여 사육해야 하므로 군납 중지 발표 즉시 군납을 중지하면 손해가 많다고 말한다. 따라서 군납 중지 발표 후 3~4개월간의 군납 물량만큼은 최소한 계약 단가대로 수매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축협은 작년 돈지육의 군납이 중지 되었을 때 1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납품농가의 생돈을 수매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금년에도 중지 기간만큼이라도 수매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란다.

작년에도 본 협회에서는 회원들로부터 군납 중지 대책을 요구받고 비육우 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국가 정책을 한번 더 이해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자고 이들을 설득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 정부의 돈지육 일시 중지 조치가 하루빨리 해제되어 군납을 위해 계획생산을 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안정된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믿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또 군납 중지 기간에는 수매, 계통 출하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안정된 소득 보장은 물론, 軍 전력 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급금의 지급 문제라든지 다음 회계년도의 물량 및 단가 계약을 전년도에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계획생산에 의한 군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